

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1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2006년 4월 12 일

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 관련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 시행됨으로써,
-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「거창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의 개정안을 제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 를
⇒ “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 로
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함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
⇒ 지방자치법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개정함(안 제1조)
⇒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으로 개정함(안 제5조)
-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(안 제2조 제1항 2호, 제4조 제1항 1호, 2호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정활동비)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3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

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 “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 2”를 “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 15조의 3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“공무원연금법시행령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 ----- -----의정활동비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-----「공무원 연금법 시행령」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